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11 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 강준현 · 박정현 · 서영석

이광희 • 윤준병 • 송재봉

맹성규 · 정태호 · 민병덕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.

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 ·기피·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,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.

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(2021헌마460).

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

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1항제 5호 삭제). 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3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	제43조(결격사유) ①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
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	<u><</u> 삭 제>		
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			
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			
과되지 아니한 사람			
6. • 7. (생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